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Yon Junheum

Korean Medical Association

요양급여 범위		INTRO
구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요양급여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실시 ·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 방법 ·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한 경우 (연구 목적 안함)	- 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1]
비급여	·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 아닌 경우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보험급여시책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2]
전액 본인 부담	· 급여 제한, 정지, 학생간 폭행에 의한 경우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 대체가능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6]
선택 급여	·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체가능 요양급여에 비하여 치료효과 낮으나 사회적 요구 있는 요양급여 · 대체가능 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사회적 요구 있는 급여 · 치료효과 우수 예상되거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축적 등이 필요	-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2



2019-11-09

출처: HIRA 3

1. 의료행위 급여등재 절차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4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출처: HIRA 5

급여·비급여 여부 확인

행위 등재

□ 전문적 검토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17.9.1. 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5항 신설

□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임상전문가와 건강보험 종사자 위주 소위원회 인력풀)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18.4.1. 시행)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출처 : HIRA 6

급여여부 평가 - 결정·조정신청 제도

행위 등재

	결정신청	조정신청
신청인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최종 + 가입자
신청의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안전성 유효성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이미 고시된 행위 ·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자원의 양, 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한	30일 이내 (최초 시행일부터)	수시
처리기한	100일	100일
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구비서류	①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② 상대가치점수 산출근거 자료 ③ 비용요구에 관한 자료 ④ 국내·외 실시현황 ⑤ 소요장비·소요재료·약제 허가 (신고) 관련 자료 ⑥ 국내·외 연구논문 등	① 조정신청사유 ② 조정신청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③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산출근거 및 내역 ④ 기타 참고자료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출처 : HIRA 7

급여여부 평가 - 세부절차(결정신청)

행위 등재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출처 : HIRA 8

급여여부 평가 - 세부절차(전문평가위)

행위 등재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출처 : HIRA 9

급여여부 평가 - 급여/선별급여 등

행위 등재

□ 급여여부 및 본인부담률

구 분	범 주	본인부담률
급여	· 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된 경우 ·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급여 본인부담률 적용 (입원, 외래)
선별급여	·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로서 대체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80 수준
비급여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90 수준 또는 비급여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90 수준 또는 비급여
비급여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비급여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출처 : HIRA 10

2. 의사업무량 산출 과정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11

급여여부 평가 중 상대가치점수 산출

의사업무량

□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

(의사)업무량



(의사)서비스
의사의 전문적 노력에 대한 보상
*시간 및 강도 고려

중급자 단체 (의사협회 등)

자원의 양 (진료비용)



의료인력 재료 의료장비 기타
직접비용 :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간접비용 : 행정인력인건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전기료 등

임상전문가 패널(22개) 및 심평원
* 임상전문가 패널: 직접비용 자료 구축,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230 여명

전문연구기관

위험도



의료분쟁해결비용

통합 및 조정 (심평원)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출처 : HIRA 12

의사업무량 산출 근거 요청 (의협->전문과)

의사업무량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문서번호 대의협 제0811-0085호

시행일자 2017. 4. 14.

수신자 전문과회장 (내과, 안과)

참조

제목 **요양급여 결정신청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산출 요청 (2건)**

1. 관련 근거 : 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계부-880호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식도내강 실시간 종선형영상검사법**’ 등의 행위의 적정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등 사정에 대한 귀 학회 의견을 요청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2017. 4. 28(금)까지 포털시스템 의견을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요청사항]

순번	발의명	의견요청 학회	요청내역
1	식도내강 실시간 종선형영상검사법	내과	적정 의사업무량점수 [첨부 1서식 작성]
2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농도 측정	안과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13

의사업무량 산출 근거 제출 (전문과->의협)

의사업무량

[참조1]

의사업무량 산출(안) 의견서

제출 기일 2017. 04. 28.

1. 검토대상 행위

※ 신의료기술 고시명(결정신청의 경우), 기존 행위명(조정신청의 경우)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명 식도내강 실시간 종선형영상 검사법

영문명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2. 행위 분류, 축성, 3Axis(안)

※ 자료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1”에만 단일분류항목의 행위명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신의료기술 고시명, 기존 행위명을 수정해서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류 항목수에 따라 행을 추가하고, 분류 계층을 추가(1-1-2 등)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축성과 3Axis는 “참조자료” 시트에서 유사행위명의 정보를 참고하여 각 자료를 항목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행위명	유형	관리정보	대칭/Target	범의/Means	행위/Action	3Axis
분류 (한글)	1. 식도내강 실시간 종선형영상 검사법	기능검사	내과·소화기	소화기 내시경			
	1-1.						
	1-2.						
	2.						
	2-1.						
분류 (영문)	1.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FLIP System	(가)기능검사와	(가)내과	(가)소화기	Upper GI : E(Endoscopic) Dilatation &		
	1-1.	(가)기능검사와	(가)내과	(가)소화기			
	1-2.	(가)기능검사와	(가)내과	(가)소화기			
	2.	(가)기능검사와	(가)내과	(가)소화기			
	2-1.	(가)기능검사와	(가)내과	(가)소화기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

의사업무량 산출 근거 제출 (전문과->의협)

의사업무량

3. 행위 정의 및 의사업무량 (유사행위와 비교)

※ “의견서(3p)” 시트의 행위 분류와 학회 각 항목(행위)별로 작성

1. 식도내강 실시간 종선형영상 검사법

구분	검토대상 행위	비교대상 유사행위
EDI 코드		Q7642
행위명(한글)	1. 식도내강 실시간 종선형영상 검사법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종선형확장법
축성	유형 기능검사 관리정보 내과·소화기 대상기관 소화기내시경	유형 기능검사 관리정보 내과·소화기내시경 대상기관 소화기내시경, X선투시하
3Axis	Target Means Action Endoscopic & Device : balloon (Diagnostic)imaging Dilatation & Device : balloon Dilatation & (Diagnostic)imaging	Target Means Action Endoscopic & Device : balloon (Diagnostic)imaging Dilatation & Device : balloon Dilatation & (Diagnostic)imaging
적용중	1. 식도 기능평가 2. 연동근감 3. 위·식도 역류질환 4. Achalasia 환자 5. 상부소화관 협착환자 6. POEM, GERD, Fundoplication, Botox, Dilatation 등의 시술 및 수술에 적용	1. 다음과 같은 증상인 경우 가. 상부소화관의 만성협착 나. 상부소화관의 악성협착 다. 부식성식도염의 협착 라. 수술 후 문합부 협착 마. 방사선 요법 후 식도협착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미) 2008년 2000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15

의사업무량 산출 근거 제출 (전문과->의협)

의사업무량

구분

검토대상 행위

비교대상 유사행위

1. 입원 후, 시술 전 24시간 정도 금식한다.

2.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시술 동의서를 작성한다.

3. 검사 중 즉각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선 fluoroscopic 촬영을 이용 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리 방사선 검사 또는 내시경으로 방전된 크기와 방전을 결정하고 측정 및 기록 표지를 만든다.

4. 전처치는 상부 위장관의 내시경 검사와 동일하며, 시술 전 적절한 양의 진통제와 수면제를 투여한다.

5. 16개의 임피던스 전극이 장착된 풍선 카테터를 구강에서 인두를 지나 흉골 하부까지 삽입하고, 풍선 카테터 선단에 국소 마취를 투여한다.

6. 내시경으로 미리 확인한 측정 및 기록표지와 미리 부위를 확인한 다음, 내시 경을 제거하고 풍선 카테터를 구강으로 삽입한 후, 내시경으로 다시 검사입하 여 풍선 카테터가 정확한 위치에 놓였는지 확인하고, 검사 중인 합병증이 발생 하지 않자 계속 진행한다.

7. 폐상 부위에 풍선 카테터를 위치한다. 본체의 연결된 시신경에 상하 시력 수를 시서서 앞으로 삽입하여 따른 위장은 내시경의 수직적 및 수평적도를 측정 하면서 내강을 확장시킨다. 이때 내시경으로 전방 용이 발견되면 멈추고 세 심하게 관찰한다.

8. 계속적으로 풍선 카테터의 충분한 압력에 도달하도록 시신경의 생식 시력수 값을 300m(400/500)로 서서히 증가하면서 최소 3초 이상 측정 각각의 위장은 내강의 확장, 한상, 팽창성, 수축력 및 압력 등을 측정하면서, 풍선 내강을 확장 시킨다. 풍자 및 풍선부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풍자의 증가가 필요하기도 한다.

9. KCM의 측정되는 수치를 관찰하면서는, 수술 전까지 1회 검사기 이후부터, 그 다음 수를 한 정도로 따라 반복적으로 검사해 시행하여 확장 후 부위의 긴 상, 팽창성, 압력 등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수를 추가 진행 여부를 판단 한다.

10. 시술 도중에 풍자가 심한 통증,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내시경으로 용광 지를 따라 철거 및 절제할 판단이 필요하다.

11. 시술 후 내시경 또는 X-ray 검사 등으로 관찰이 필요하여서는 확인한다.

12. 시술 후 풍자 상태에 따라 공식이 1-2일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합병증이 없다면 식사를 시작한다.

13. 시술이 끝난 후, 적절히이전 중증상 및 장기점상상의 기록, 통배 방법으 하여, 숙련된 의사가 관측한다.

“시술중”

1. 입원 후, 시술 전 24시간 정도 금식한다.

2.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시술 동의서를 작성한다.

3. 검사에 가능한 방사선 fluoroscopic 하에서 시행하며, 검사중 최대 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미리 방사선 검사와 내시경으로 방전된 크기와 방전을 결정하고 측정 및 기록 표지를 만든다.

4. 전처치는 상부 위장관내시경검사와 동일하며, 시술 전 적절한 양의 진통제와 수면제를 투여한다.

“시술후”

1. 입원 후, 시술 전 24시간 정도 금식한다.

2. 시술 후 2-3일 정도 공식이 필요하며, 풍자의 상태에 따라 식사 시작한다.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16

의사업무량 산출 근거 제출 (전문과->의협)

의사업무량

구분

검토대상 행위

비교대상 유사행위

세부 사항

전행적사항

시간(분)

구분

검토대상 행위

비교대상 유사행위

1. 입원/연일 : 낮/41세

2. 상행명 : 아탈리아

3. 입원여부/입원일수 : 외래 입원 공통

4. 마취구분 : 국소마취(전신마취)

5. 시술장소 : 수술실(내시경실 또는 X선투시실)

75.00

60.00

시술 중 시간 (주시자)

근거

시간(분)

구분

검토대상 행위

비교대상 유사행위

비교행위(Q7642)와 일반법으로 시술행위에 유사하나, 기관의 운동량상(팽창성, 압력, 지름, 벽의, 탄성의 측정)을 관측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술중간이 최소 15분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됨

8.12

6.24

분당 업무량 (업무량)

근거

시간(분)

구분

검토대상 행위

비교대상 유사행위

동 행위는 확장과 동시에, 16개 임피던스 전극이 장착된 풍선카 테터를 운용하여 움직이는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할 필요하기 때문, 입수 스트레스(강도)가 비교행위(Q7642)보다 최소 30% 이상 가함됨

608.68

374.57

의사업무량 환산율

608.68

374.57

※ 분당업무량, 의사업무량은 모두 2차 가중변환치수 추정치 0.42가 적용된 값입니다.

산출행위 의사업무량(안) = 시술중시간 × 비교행위 분당업무량 × 가중치

608.68 = 75 × (374.57 / 60) × 1.3

75 × 6.24 × 1.3

75 × 8.12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17

대한신경과학회 2019년도 제38차 추계학술대회 - 강의를 -

169

의사업무량 산출 [의협 상대가치연구단]

의사업무량

제219차 상대가치연구단 회의결과(발췌)

- 일시 및 장소 : 2017.08.28.(월) 19:00, 의협 3층 대회의실
□ 회의결과

-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평창성검사법 의사업무량 산출(안)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풍선평창법과 비교하여 분당업무량 조정지수 1.00배, 시술중시간은 기관의 운동양상(팽창성, 압력, 저항, 궤적, 탄성)의 측정값을 관측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점 고려하여 75분을 격용하여 산출함(동 행위 시행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시행하는 치료행위는 동 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산출 대상				비교 대상			
행위명	의사 업무량	시술중 시간	분당 업무량	행위명	의사 업무량	시술중 시간	분당 업무량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평창성검사법	468.22	75.0	6.24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풍선평창법	374.57	60.0	6.24

산출행위 의사업무량 = 시술중시간 × 비교행위 분당업무량

$$468.22 = 75 \times (374.57 / 60) \\ = 75 \times 6.24$$

2019-1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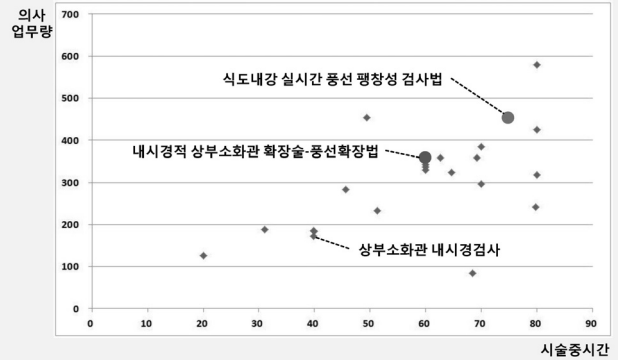
Korean Medical Association

18

의사업무량 산출 [의협 상대가치연구단]

의사업무량

산출 대상과 동일 패밀리(소화기계내시경) 행위 분포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19

행위관련 기준

FIN

- 급여기준
 -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주' 사항
 - 급여기준(세부사항) 고시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

감사합니다.

2019-11-09

Korean Medical Association

21